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December, 2025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

새로운 《중재법》 하의 임시중재 제도 해석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국가에너지국, 《에너지 분야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시행)》 제정 및 발표
02. 해관총서·국가위생건강위원회·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수입식약공용물질 분류관리조치 시범 실시 보도에 관한 공고》 공동 발표
03. 해관총서, 자가사용 및 공용물품 업무전자서류(단증) 도입 및 시행 결정
04. 국가세무총국·최고인민법원, 《기업 파산절차 중 일부 세금 및 비용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공동 발표

■ 법률 뉴스 ■

새로운 《중재법》 하의 임시중재 제도 해석

2025년 개정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입법적 차원에서 최초로 임시중재(临时仲裁)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중재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받습니다. 국제 중재 실무에서 임시중재는 기관중재와 병행되는 성숙하고 중요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나, 중국 국내법 체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를 명확하게 승인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습니다. 새로운 《중재법》 제 82 조의 신설은 이러한 구조적 제도 공백에 대하여 최초로 입법적 정면 대응한 것으로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방과 리스크에 대한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둔 중국 중재 입법의 선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도적 연혁의 관점에서 중국의 임시중재에 대한 태도는 일시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1994년 《중재법》은 중재 합의시 반드시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도로 기관화된 제도 설계는 중재 제도가 아직 초기였던 단계에는 현실적 합리성이 명확하였으며 조직화된 관리를 통해 절차의 규범성과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 선택은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 절차를 구성·운영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중국 국내 제도가 국제 실무와 점차 제도적 격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뉴욕 협약》 체약국으로서 외국 임시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역내 임시중재는 장기간 법적 승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 머무르는 내외 불일치가 뚜렷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2016년부터 사법정책적 차원에서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자유무역구 사법 실무에서 특정 유형의 섭외 분쟁에 한하여 임시중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제도 조정의 방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상하이, 하이난 등지에서는 지방 입법을 통한 제도 탐색과 개별 사건 실무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 임시중재의 입법적 확인을 위한 현실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새로운 《중재법》 제82조는 적용 범위가 명확히 설정된 임시중재 제도를 공식적으로 확립하여, “제한적 개방, 점진적 추진”이라는 전체 입법 기조를 계승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제 8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시중재는 두 가지 유형의 섭외 분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첫째는 섭외 해사 분쟁이며; 둘째는 국무원의 승인(비준)을 받은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자유무역항 등 특정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등기된 기업 상호간 발생하는 섭외 분쟁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임시중재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국제화 수준이 높고 거래 규칙이 성숙하며 리스크가 비교적 통제 가능한 분쟁 영역에만 임시중재를 정교하게 도입한 것으로서, 신중한 입법 기조를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절차적 설계 측면에서 제 82 조는 당사자 의사 자치를 고도로 존중하여,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 방식, 적용 중재규칙, 중재지 및 중재언어 등 핵심적인 절차 사항을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관 중재가 절차를 강하게 통제해 온 구조를 관념적으로 상당 부분 돌파한 것으로서, 국제중재의 통상적 관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법은 중국 특색의 비안(备案)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 관련 정보를 중재 협회에 비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업계 차원의 감독과 절차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나, 그 법적 성질 및 구체적 법적 효과는 향후 실무 전개 및 사법해석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안이 중재판정의 효력 발생 혹은 집행 신청의 전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입법 경로는 영국·싱가포르·홍콩 등 전통적 중재 중심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 지역들은 대체로 임시중재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입법 모델을 취하는 한편,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지정기관이 보충적으로 중재인을 선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중재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의 새로운 법은 이러한 공식적인 보완 장치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더 많은 절차 리스크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중재합의의 정교한 설계 및 실무에서의 협력 의지에 의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선택은 당사자에게 고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재 합의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 요구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며 당사자의 절차 조율 능력에 대해서도 더 높은 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새로운 《중재법》 제 82 조는 국제 임시중재 제도를 단순히 도입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법치 환경을 전제로 리스크 통제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심층적으로 혼자화된 제도 구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장치를 통하여 제도 혁신과 안정적 전환 사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첫째, 명확하고 엄격한 적용 범위 제한(특정 구역·특정 주체·특정 분쟁 유형)을 통해 임시중재를 섭외 해사 및 고도의 국제적 상사 분쟁 영역에 선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규칙이 성숙하고 리스크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실행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비안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되 적정 수준의 감독 접점을 마련함으로써 절차의 가시성과 업계 자율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중재합의의 효력·판정의 취소 및 집행 등 《중재법》 상 일반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임시중재에 대해서도 기관중재와 연동되는 사법적 지원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프레임은 중국 중재 제도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임시중재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신중한 입법이라는 기본 성격상, 임시중재의 중국 내 적용은 단기적으로 국제화된 상사 및 해사 분쟁 영역에 주로 집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그 제도적 경계가 급격하게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 82 조에서 확립한 “제한적 개방, 절차 가치, 적정 감독”이라는 기본 원칙은 중국 중재제도가 보다 다원화된 분쟁해결 방식을 수용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주류 실무와 점진적으로 더욱 심화된 차원에서 융합될 수 있도록 견고한 입법적 기반과 명확한 제도 진화의 출발점을 제공하였습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 국가에너지국, 《에너지 분야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시행)》 제정 및 발표 
- 해관총서·국가위생건강위원회·시장감독관리총국·국약품감독관리국, 《수입식약공용 물질 분류관리조치 시범 실시 보도에 관한 공고》 공동 발표 
- 해관총서, 자가사용 및 공용물품 업무전자서류(단증) 도입 및 시행 결정 
- 국가세무총국·최고인민법원, 《기업 파산절차 중 일부 세금 및 비용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공동 발표 

법무법인[유] 지평